

제 19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25 조에 의거 제 19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 년 3 월 23 일(월요일) 오전 9 시
2. 장 소 : 아산 2 캠퍼스 강당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77-50)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1) 제 1 호 의안 : 제 19 기(2025.1.1.~2025.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 1 주당 300 원)
- 2)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3)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1 호 의안 : 사내이사 최왕기 중임의 건
제 3-2 호 의안 : 사내이사 강동호 선임의 건
제 3-3 호 의안 : 사외이사 최선집 선임의 건
- 4)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5) 제 5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다운로드 : www.hanamts.com → 투자정보 → 공고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제 14 기 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 368 조의 4)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6년 3월 13일 오전 9시 ~ 2026년 3월 22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 13조제 2항)

2026년 3월 6일

하나머티리얼즈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현 주 (직인생략)

문의전화 : 본사 재무그룹 (041-410-1012)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案)	개정이유
제 32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략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략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개정안 반영
제 35 조(이사의 수) 회사는 이사를 3 명이상 6 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35 조(이사의 수) 회사는 이사를 3 명이상 5 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 는 이사총수의 3 분의 1 이상 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 반영
제 39 조(이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신설> ②~④ 항 चेहा <생략>	제 39 조(이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상법 개정안 반영 2 항 신설 및 항 चेहा
제 40 조 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법 제 397 조,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0 조 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독립이사 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법 제 397 조,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법 개정안 반영
제 44 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ESG 위원회 2. 사외이사추천위원회 3. 내부거래위원회 4. 보상위원회 ②~③ <생략>	제 44 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ESG 위원회 2. 독립이사 추천위원회 3. 내부거래위원회 4. 보상위원회 ②~③ <생략>	상법 개정안 반영

<p>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설></p>	<p>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u>2026년 3월 23일</u>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u>① 제 35조, 제 40조의 2 및 제 44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u> <u>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법률 제 20991호 2025.7.22) 부칙 제 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독립이사 요건 시행일 반영</p>
--	---	-----------------------

[별첨 2]

이사 선임의 건(안)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왕기	1969.03.01	사내이사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강동호	1972.02.12	사내이사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최선집	1956.01.07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왕기	하나머티리얼즈 연구소장	1995~2010 2010~현재	- MEMC 결정성장 수석연구원 - 하나머티리얼즈 연구소장	없음
강동호	하나머티리얼즈 지원팀장	2006~2009 2009~2010 2010~2014 2016~2018 2019~2021 2021~현재	- 골드만삭스증권 투자금융 상무 - 노무라증권 투자금융 상무 - KT&G 신사업개발실장 - KTB 프라이빗에쿼티 투자본부장 - GS 에너지 신사업개발부문장 - 하나머티리얼즈 지원팀장	없음
최선집	변호사	1992~현재 2015~2022 2015~현재	- 現 국세청 고문변호사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회협력 부회장 - 現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고문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최왕기	해당 사항 없음		
강동호	해당 사항 없음		
최선집	해당 사항 없음		